

# 한국경제의 G7 경제력 달성 가능성과 과제

2023. 11월

## 목 차

I. G7의 역사와 형성과정 .....	1
II. G7 경제력 달성 가능성 추정 .....	3
① 분석의 전제 .....	3
② 한국의 G7 경제력 달성 요건 점검 .....	3
③ 한국의 G7 경제력 달성 시뮬레이션 .....	6
III. G7 경제력 달성을 위한 과제 .....	8
① 노동시장 경쟁력 확충 .....	8
② 자본투입 확대 .....	16
③ 중요소생산성 제고 .....	25
※[첨부] ① G7과 한국의 주요 경제지표 비교 ...	33
② EIU DEMOCRACY INDEX 2022 .....	36
③ 적정 이민 취업자 유입 수 추산 .....	38

## I. G7의 역사와 형성과정

- G7(SUMMIT)은 세계경제, 국제정치 문제 논의를 위한 주요 7개국(現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 정상 협의체로 '71년에 태동
- '71년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직후 세계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미국 재무장관(조지 숄츠)의 제안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과의 재무장관 협의체 구성
  - \* 브레턴우즈 체제 : '44년 출범한 통화제도 협정으로 美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환본위제도 → '71년 美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금달러 교환) 중지를 선언하면서 체제 붕괴
- '73년 일본 재무장관의 참여로 G5 재무장관 협의체로 확대
- 독일, 프랑스 재무장관이 국가 원수가 되면서 '75년 재무장관 회의가 정상 회담으로 격상, 이탈리아가 추가되면서 '75년 11월 G6 정상회의 개최
  - \* Helmut Schmidt(독일)- 74년 5월 재무부 장관 → 총리
  - \* Giscard d'Estaing(프랑스)- 74년 5월 경제재정부 장관 → 대통령
- 캐나다는 '75년부터 참여를 원했으나 글로벌 위상이 크지 않아 불참, '76년 미국의 강력한 요청으로 캐나다를 포함한 G7 정상회의로 확대
- '97년 덴버 서밋 선언 이후 '98년 러시아 포함 G8으로 확대됐으나, '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대응 조치로 G8 자격 상실, G7 체제로 복귀
  - \* 덴버 서밋 선언('97.6.22): 러시아의 시장경제와 민주국가로의 전환 노력(러시아의 WTO 조기가입 목표)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 차기 G8 정상회담 정식 멤버로 초청
- G7 회원국의 역사적 자격 요건은 '75년 11월에 개최된 제1차 G6 정상 회의에서 규정된 G6 회원국 정치·경제적 자격 요건에서 유래
- 당시 G6 회원국의 정치·경제적 자격 조건은 정치체제(자유민주주의), 경제발전도(1인당 GDP), 세계경제 영향력(세계GDP 비중)으로 구성

### ◆ G6 회원국 정치·경제적 자격요건('75.11월)

- ①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 ② 안정적이며 높은 경제발전도(1인당 GDP \$11,000 이상)
- ③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세계 총 GDP의 4% 이상)

- '75년 G6 세계 GDP 순위로는 1위 미국(27.1%), 2위 일본(8.4%), 3위 독일(7.2%), 4위 영국(5.6%), 5위 프랑스(5.1%), 6위 이탈리아(4.5%)

〈 1975년 G6 회원국 주요 경제지표 〉

순위	국가	세계 GDP 비중	1인당 GDP
1위	미국	27.1%	\$27,380
2위	일본	8.4%	\$16,334
3위	독일	7.2%	\$20,042
4위	영국	5.6%	\$21,578
5위	프랑스	5.1%	\$20,498
6위	이탈리아	4.5%	\$17,847

\* 주 : 1인당 GDP는 '15년 불변가격 기준

\* 출처 : World Bank

- 現 G7도 '75년에 규정된 G6 정치·경제적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편성

◆ 現 G7 회원국 정치·경제적 자격요건(한경협 추정)

- ①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 ② 안정적이며 높은 경제발전도(1인당 GDP \$30,000 이상<sup>주</sup>)
- ③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세계 총 GDP의 2% 이상<sup>주</sup>)

\* 주 : 既 G6 자격요건에서 現 G7 국가들의 관련지표 특징을 감안하여 한경협 추정

〈 '22년 현재 10대 경제대국 G7 자격요건 충족 여부 〉

(단위: 10억 달러, 달러)

국가	GDP(세계점유율)	1인당 GDP	민주주의 여부	비고
미국	25,462.7(25.4%)	76,343.3	◎	G7
중국	17,886.3(17.9%)	12,669.6	×	조건 미부합(①, ②)
일본	4,237.5(4.2%)	33,853.8	◎	G7
독일	4,085.7(4.1%)	48,756.3	◎	G7
인도	3,389.7(3.4%)	2,391.9	◎	조건 미부합(②)
영국	3,081.9(3.1%)	45,461.1	◎	G7
프랑스	2,780.1(2.8%)	42,349.9	◎	G7
러시아	2,244.3(2.2%)	15,645.7	×	조건 미부합(①, ②)
캐나다	2,137.9(2.1%)	55,036.5	◎	G7
이탈리아	2,012.0(2.0%)	34,084.5	◎	G7

\* 주 : 1) GDP 세계점유율은 '22년 현재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2) 본 보고서에서의 조건① 자유민주주의의 여부는 EIU 기준으로 판단(ex, EIU는 중국을 비민주 국가(권위주의국가)로 분류), 첨부② 「EIU DEMOCRACY INDEX 2022」 참조

\* 자료 : IMF

## II. G7 경제력 달성 가능성 추정

### ① 분석의 전제

- 한국의 G7 경제력 달성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75년 G6 요건을 준용하여 현재의 G7 국가들의 경제력 요건을 추정할 필요

◆ 現 G7 회원국 경제적 자격요건(한경협 추정)

- ① 안정적이며 높은 경제발전도(1인당 GDP \$30,000 이상<sup>주</sup>)
- ②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세계 총 GDP의 2% 이상<sup>주</sup>)

\* 주 : 既 G6 자격요건에서 現 G7 국가들의 관련지표 특징을 감안하여 한경협 추정

- 조건 ①은 기본 전제조건이고, ②가 G7 경제력 달성의 핵심 조건

\* ex) 룩셈부르크 등 다수의 소규모 부국의 경우 조건①은 만족하나, 세계 GDP 점유율(조건②) 측면에서 G7 요건을 미충족

### ② 한국의 G7 경제력 달성 요건 점검

- '22년 기준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 ▶1인당 GDP 고소득 국가(3만불 이상) 요건은 충족하나, ▶세계 GDP 점유율 측면에서 (假)G9에 해당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기준 한국 민주주의지수는 8.03으로 167개국 중 24위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10점에 가까울수록 민주주의 수준 高)

\* EIU의 민주주의 수준 분류는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ies) ▶결함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ies) ▶혼합체제(Hybrid regimes) ▶권위주의(Authoritarian regimes)이며, 국가별로 0~10점의 지수 부여(10점일수록 민주주의 수준이 성숙)

- [1인당 GDP] 한국의 1인당 GDP는 32,418달러로 세계 35위

- [세계 GDP 점유율] 한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7%(1.67조\$)로, 자유민주주의와 고소득국가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들 중 세계 9위에 해당

〈 '22년 한국경제의 현위치 〉

순위	국가명	1인당 GDP(\$)	세계경제 점유율(%)
1	미국	76,343.3	25.43
2	일본	33,853.8	4.23
3	독일	48,756.3	4.08
4	영국	45,461.1	3.08
5	프랑스	42,349.9	2.78
6	캐나다	55,036.5	2.14
7	이탈리아	34,084.5	2.01
8	호주	64,813.9	1.70
<b>9</b>	<b>한국</b>	<b>32,418.3</b>	<b>1.67</b>
10	네덜란드	57,427.8	1.01
11	스위스	93,657.2	0.82
12	대만	32,687.4	0.76
13	스웨덴	56,188.3	0.59
14	노르웨이	105,825.9	0.58
15	벨기에	49,843.2	0.58
16	아일랜드	103,311.0	0.53
17	이스라엘	54,336.8	0.52
18	오스트리아	52,191.8	0.47
19	싱가포르	82,807.7	0.47
20	덴마크	68,294.9	0.40

\* 자료 : IMF

□ G7 경제적 자격요건은 아니지만, 세계 영향력 측면에서 군사력도 주요한 요소인데 한국은 '23년 기준 세계 6위에 해당하는 군사강국

○ 현 G7 국가와의 비교에서는 미국(세계 1위), 영국(5위) 다음에 위치

\* 美 군사력 평가기관인 Global Firepower(GFP)에서 발표하는 지수 기준

〈 G7과 한국의 군사력 순위 〉

구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한국
군사력지수	0.0712	0.1711	0.3881	0.1435	0.1848	0.3956	0.1973	<b>0.1505</b>
세계순위	1위	8위	25위	5위	9위	27위	10위	<b>6위</b>

\* 주 : 군사력지수는 0점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함을 의미

\* 자료 : Global Firepower('23년)

□ 현 추세대로라면 2030년까지 한국의 G7 경제력 달성 가능성은 작음

○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3년 3.4만 달러에서 '30년 4.5만 달러로 상승하여 고소득국가 요건은 유지

〈 G7과 한국의 1인당 명목 GDP 추이 전망 〉

(단위: 달러)

국가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미국	79,209.9	81,862.8	84,534.3	87,282.5	90,116.6	93,033.9	96,026.5	99,094.3
일본	34,990.7	36,152.0	37,311.7	38,493.6	39,721.6	41,004.8	42,342.4	43,733.5
독일	50,481.2	52,076.2	53,545.8	54,979.2	56,423.0	57,896.8	59,408.5	60,960.0
영국	47,968.0	49,574.5	51,147.8	52,748.2	54,399.6	56,107.4	57,866.3	59,676.0
프랑스	42,305.3	43,595.5	44,880.4	46,199.2	47,565.9	48,977.5	50,436.6	51,943.6
캐나다	56,797.9	58,558.4	60,293.2	62,043.9	63,832.4	65,664.4	67,547.6	69,469.8
이탈리아	36,126.1	37,276.6	38,413.9	39,579.4	40,780.8	42,023.3	43,301.8	44,612.8
한국	33,981.9	35,560.4	37,124.1	38,670.5	40,210.1	41,753.6	43,301.0	44,855.0

\* 주 : 1) 명목 GDP 전망치(OECD, 한경협)를 인구 전망치(세계은행)로 나누어 1인당 GDP 전망치 계산  
2) OECD는 GDP 전망치를 각 국 통화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대미달러 환율을 사용하여 달러로 전환(환율은 전망이 어려워, '22년 환율이 '30년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계산)

\* 자료 : OECD, 세계은행, 한경협

○ 그러나 한국의 세계 GDP 점유율은 '23년 1.64%에서 '30년 1.45%로 0.19%p 하락하여, 점유율 측면에서의 G7 수준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G7과 한국의 세계 GDP 비중 추이 전망 〉

(단위: 10억 달러, %)

국가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미국	26,537.0 (24.87)	27,565.0 (24.35)	28,605.6 (23.88)	29,678.6 (23.43)	30,786.8 (23.01)	31,930.0 (22.61)	33,106.9 (22.22)	34,316.2 (21.85)
일본	4,352.5 (4.08)	4,471.0 (3.95)	4,587.7 (3.83)	4,705.3 (3.72)	4,826.3 (3.61)	4,951.3 (3.51)	5,080.2 (3.41)	5,212.6 (3.32)
독일	4,239.4 (3.97)	4,368.7 (3.86)	4,487.4 (3.75)	4,603.0 (3.63)	4,719.0 (3.53)	4,837.1 (3.43)	4,957.5 (3.33)	5,080.3 (3.24)
영국	3,222.7 (3.02)	3,340.8 (2.95)	3,456.9 (2.89)	3,575.1 (2.82)	3,696.9 (2.76)	3,822.7 (2.71)	3,952.2 (2.65)	4,085.2 (2.60)
프랑스	2,879.3 (2.70)	2,972.4 (2.63)	3,065.4 (2.56)	3,160.5 (2.50)	3,258.6 (2.44)	3,359.6 (2.38)	3,463.4 (2.32)	3,570.0 (2.27)
캐나다	2,229.0 (2.09)	2,316.3 (2.05)	2,403.6 (2.01)	2,492.4 (1.97)	2,583.3 (1.93)	2,676.9 (1.90)	2,773.4 (1.86)	2,872.8 (1.83)
이탈리아	2,119.2 (1.99)	2,179.5 (1.93)	2,238.5 (1.87)	2,298.5 (1.81)	2,360.1 (1.76)	2,423.2 (1.72)	2,487.7 (1.67)	2,553.3 (1.63)
한국	1,752.1 (1.64)	1,830.7 (1.62)	1,908.2 (1.59)	1,984.4 (1.57)	2,059.7 (1.54)	2,134.7 (1.51)	2,209.3 (1.48)	2,283.3 (1.45)

\* 주 : 1) GDP는 명목 기준, 괄호 안은 각 연도별 세계 GDP 대비 비중  
2) OECD는 GDP 전망치를 각 국 통화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대미달러 환율을 사용하여 달러로 전환(환율은 전망이 어려워, '22년 환율이 '30년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계산)

\* 자료 : OECD, IMF, 한경협

### ③ 한국의 G7 경제력 달성 시뮬레이션

#### ※ 한국이 '30년까지 G7 수준의 경제력을 달성한다는 시나리오로 분석

□ 우리나라가 '30년까지 G7 경제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30년 1.4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GDP 비중을 1.63%까지 끌어올려야 함

○ G7 중 세계 GDP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이탈리아로 '30년 전망치(OECD)는 1.63%, 한국은 최소 이탈리아 수준이어야 G7 경제력 요건 충족

□ 한국이 '30년까지 세계 GDP 비중을 1.63%로 올리기 위해서는 연평균(CAGR) 3.5%의 실질 GDP 증가(명목 기준 5.4%)가 필요

○ 3.5% 성장률은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23년 기준 잠재성장률 2.1%, IMF)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노동투입의 감소를 방어하고, 자본투입 증가를 유도하며, 총요소생산성의 획기적 개선 노력이 요구

○ [노동투입 가정]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이민 활성화 등으로 노동투입 감소세를 증가세로 전환

\* 최근 5년간('18년~'22년) 노동투입증감률(연평균, OECD) :  $\Delta 0.12\% \rightarrow$  (목표) 0.5%

\* 목표 증가율 0.5%는 코로나 이전 '10년대('10~'19년) 노동투입 증가율(0.34%)의 1.5배 수준

○ [자본투입 가정] 세계 등 투자유인 강화, FDI 유치 확대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자본투입 증가율을 현행 대비 20% 개선

\* 최근 5년간('18년~'22년) 자본투입증감률(연평균, OECD) : 3.7%  $\rightarrow$  (목표) 4.4%

○ [총요소생산성 가정] 노동투입과 자본투입의 증가율을 각각 0.5%, 4.4%로 전제할 경우, 목표 GDP성장률(3.5%) 달성을 위한 총요소생산성은 1.8%로 현 수준 대비 1.5배 개선 필요

\* 최근 5년간('18년~'22년) 총요소생산성 증감률(연평균, OECD) : 1.2%  $\rightarrow$  (목표) 1.8%

#### < 2030 한국경제 G7 경제력 달성 요건 >

(증가율, %)

구분	실질 GDP <sup>주2)</sup>	노동투입 <sup>주3)</sup> (총근로시간)	자본투입 <sup>주4)</sup> (총자본서비스)	총요소생산성 <sup>주5)</sup>
'30년 G7 경제력 달성 요건 <sup>주1)</sup> ( '30년 GDP 비중 1.63%)	3.5	0.5	4.4	1.8

\*주: 1) G7 수준의 경제력 달성 위해서는 G7 국가 중 세계 GDP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인 이탈리아('30년 기준 1.63%) 수준을 '30년까지 달성해야함

2) 실질 GDP 증가율은 명목 GDP 증가율에서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을 차감하여 계산(GDP 디플레이터 증가율은 '23~'30년까지의 GDP 디플레이터 연평균 증가율 전망치를 사용)

3) 한국의 노동투입 증가율은 현재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감소하는 상황이지만(최근 5년('18~'22년) 평균  $\Delta 0.12\%$ ),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적극적인 이민 정책 등으로 코로나 이전 '10년대('10~'19년) 노동투입 증가율(평균 0.34%)의 1.5배 수준 달성 가정

4) 자본투입증가율은 FDI 유치 확대 등으로 최근 5년('18~'22년) 평균치(3.7%) 대비 20% 개선 가정  
5) 총요소생산성은 실질 GDP 증가율과 노동·자본투입 증가율을 바탕으로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사용하여 도출(산출 방법 아래 점선박스 참고)

\* 자료 : OECD, 한경협

#### < (목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산출 방식 >

○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Y = AL^\alpha K^{1-\alpha}$  (Y는 실질 GDP, A는 총요소생산성, L은 노동투입(총근로시간), K는 자본투입(총자본서비스),  $\alpha$ 는 노동소득분배율) 양변에 자연로그(ln)를 취하고 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증가율 산식으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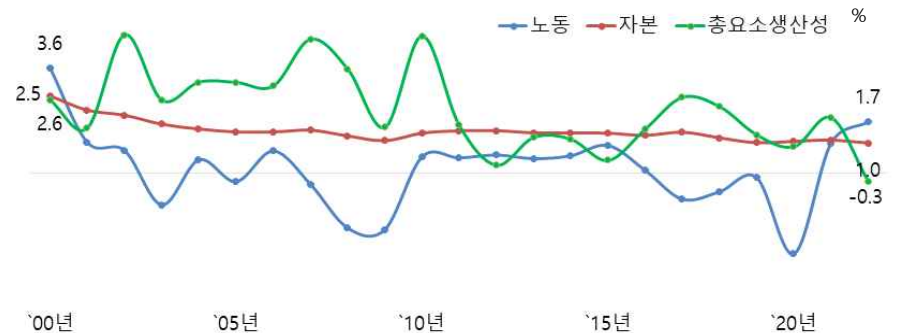
$$\rightarrow \frac{\dot{Y}}{Y} = \frac{\dot{A}}{A} + \alpha \left( \frac{\dot{L}}{L} \right) + (1-\alpha) \left( \frac{\dot{K}}{K} \right) \quad \left( \frac{\dot{Y}}{Y}, \frac{\dot{L}}{L}, \frac{\dot{K}}{K} \text{는 각각 GDP, 노동투입, 자본투입 증가율을 의미} \right)$$

(GDP 증가율 = 총요소생산성증가율 + 노동투입증가율 + 자본투입증가율)

○ 위 산식에 실질 GDP 증가율, 노동·자본투입 증가율을 대입하여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산출( $\alpha$ 는 최근 5년('18년~'22년) 평균인 0.70 사용)

#### < (참고) 자본, 노동,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 추이 >

○ '00년 이후 자본, 노동, 총요소생산성의 GDP 성장기여도 하락



\* 자료 : OECD

### III. G7 경제력 달성을 위한 과제

#### ① 노동시장 경쟁력 확충

□ 노동의 GDP 성장기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투입의 감소를 방어하고, 노동생산성을 강화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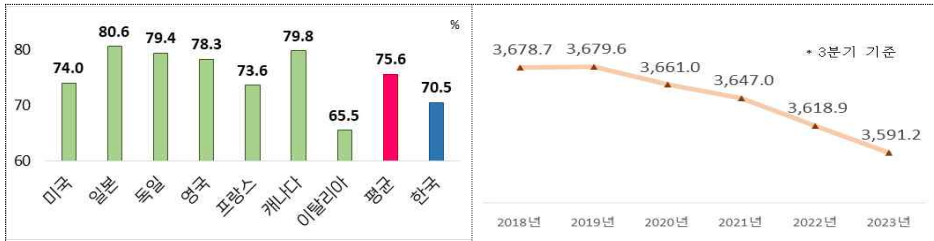
- ① [노동투입량 유지]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이민 노동자 유입 확대
- ② [생산성 강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 전문인력 육성,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서비스업 R&D 지원 확대

#### ①-1)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 [현황] 한국은 선진국 대비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여성경력 단절 등의 특징을 보이며, 향후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될 전망

- \*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비중
-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2년 기준 70.5%로, G7 평균(75.6%) 대비 5.1%p 낮은 수준이고, OECD 38개국(평균 73.2%) 중 30위로 하위권

< G7 vs. 한국 경제활동참가율('22년) > < 한국 생산가능인구(15~64세) 추이(만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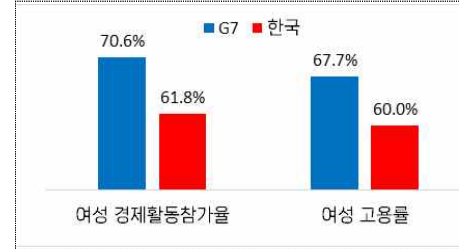
\* 자료 : OECD.stat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특히, '22년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1.8%, 고용률은 60.0%로 두 지표 모두 OECD 38개국 중 32위 수준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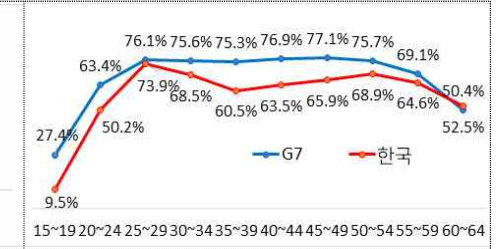
- \* 여성 고용률은 여성 취업자를 15~64세 여성 인구로 나눈 비중
- \*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20대까지 증가하다가 30대에 크게 감소한 후 40대 후반에 회복하는 M자형 곡선이 특징으로 G7에 비해 경력단절로 인한 고용 변화가 큼

< 여성 경향을 및 고용률 비교('22년) >



\* 자료 : OECD.stat

<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비교('22년) >



\* 자료 : OECD.stat

- [문제점] 파견·기간제 사용규제, 근로시간 등 주요국에 비해 엄격한 노동시장 규제로 기업들이 원활하게 인력을 확충하는데 애로
- 주요 국가들은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는 반면, 한국은 제조업을 제외한 32개 업무만 제한적으로 허용
- 또한 주요국 대부분이 기간 제한 없이 파견·기간제 근로자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반면, 한국은 파견·기간제 사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

< 파견·기간제 근로 사용규제 비교 >

구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파견근로	허용업무	32개 한정 (제조업 제외)	쏘 업종	쏘 업종	쏘 업종 (건설·의료 등 제외)
	사용기간	2년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기간제근로	사용기간	2년	제한없음	제한없음	1회 36개월 (무제한 갱신 가능)

-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짧은 단위기간(1개월~6개월) 등 경직적 근로시간과 보육시설 등 육아지원 부족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제한

< 개선과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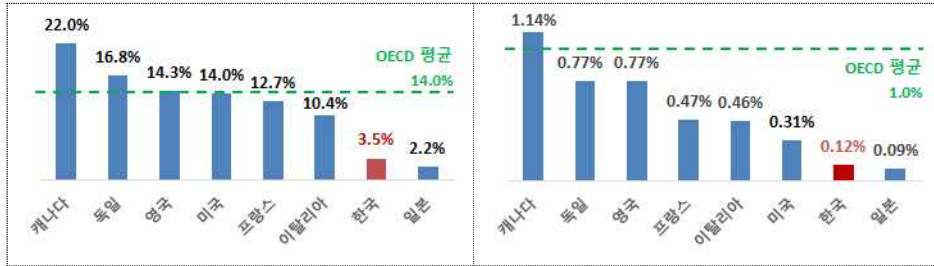
- ◆ 노동시장 참여 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제의 과감한 완화 필요
- 주요국처럼 파견대상 업무에 제조업을 포함하고, 업무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며, 파견·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
- 선택·탄력 근로시간제 단위 정산기간 확대, 육아지원(보육시설 등) 확충

## ①-2) 이민 노동자 유입 확대

□ [현황] 한국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 인구 대비 이민자 수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이민자 유치 실적도 저조

○ 인구 대비 총 이민자(외국출생인구) 수 비율과, 한 해 신규 유입된 이민자 수 비율 모두 '22년 기준 각각 OECD 35위, 34위로 최하위

< 인구 대비 총 이민자수 비중('22년) > < 인구비 한해 신규유입 이민자수 비중('22년) >



\* 자료 : OECD(38개국)

\* 자료 : OECD(코스타리카 제외 37개국)

□ [문제점]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는 이민자의 적극 유치를 통한 노동력 확보가 절실하나, 관련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와 정주여건 미흡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취업자 수 감소('31년까지 약 200만명) 대체를 위해서는 매년 22.3만명의 이민 취업자 유입 필요('23.4월, 한경연)

\* 필요 이민자 수 추산 방법은 첨부3 「적정 이민 취업자 유입 수 추산」 참조

○ 그러나 작년 이민취업자는 '21년 대비 1만명 감소('21년 88.7만명→ '22년 87.7만명)한 상황으로, 이민자 유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필요

○ 현재 외국인 근로소득에 누진세율(6~45%) 대신 19%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만, 실질적 수혜 대상이 적어 실효성 미흡

\* '22년 기준 年 임금 3,600만원 미만인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70%를 차지하며, 이들은 소득세 누진세율 최하위 2개 구간 세율인 6~15%가 적용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체류 기간 요건, 소득·자산 요건 등 영주권 취득 요건이 까다로운 점도 이민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일반 영주권(F-5-1) 기준요건 : ① 5년 이상 한국 체류, ②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소득의 2배 이상이거나, 순자산이 전년도 국민 평균 순자산의 1.5배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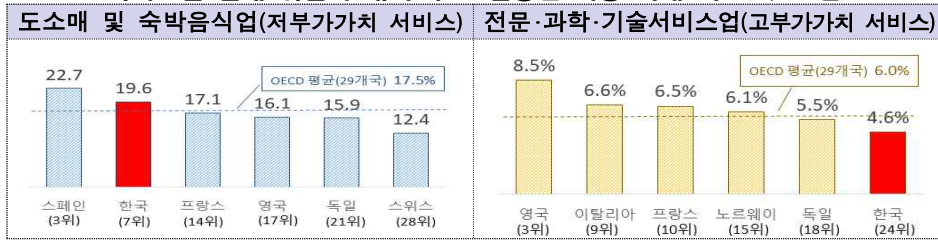
### < 개선과제 >

-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세제지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영주권 부여를 확대하여 이민 문턱을 낮추고 정주 여건을 개선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단일세율을 인하(19% → 10%)
- 외국인 영주권(F-5비자) 부여를 위한 의무 체류기간을 단축(5년 → 2년)하고, 소득·자산 요건을 폐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완화

## ㉔-1)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 전문인력 육성

- [현황 및 문제점] 서비스 인력이 도소매 등 저부가가치 산업에 몰려있고, 과학기술 등 고부가가치 분야 R&D 인력이 부족해 생산성 향상에 제약
- 서비스업 취업자 중 도소매·숙박업 비중(19.6%)은 OECD 평균(17.5%)을 상회, 반면 전문과학·기술 비중(4.6%)은 OECD 평균(6.0%)을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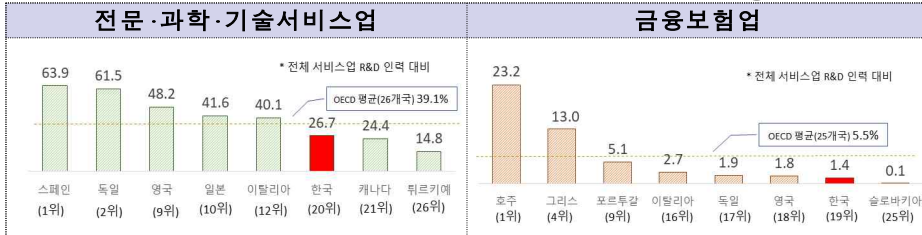
〈 서비스업 전체 취업자 대비 주요 업종별 비중 국제 비교(% , '22년) 〉



\* 자료 : OECD.stat

- 서비스업 R&D 인력 중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26.7%), 금융보험업 (1.4%) 등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하위권

〈 서비스업 전체 R&D 인력 대비 주요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 비중(% , '19년<sup>추</sup>) 〉



\* 주 : '금융보험업'의 경우, 한국, 일본, 슬로바키아는 '20년 기준

\* 자료 : OECD.stat

### 〈 개선과제 〉

- ◆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일자리·인력 양성 위한 규제·교육 개혁
  - 서비스업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서비스업 일자리를 확대
    - \* ex)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폐지, 미디어서비스사업 면허제(기존 허가제) 전환 등
  - SW·AI 등 인력수요가 높은 분야의 학·석사 연계 패스트트랙 신설, 산학협력 활성화 등 서비스 신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 ㉔-2)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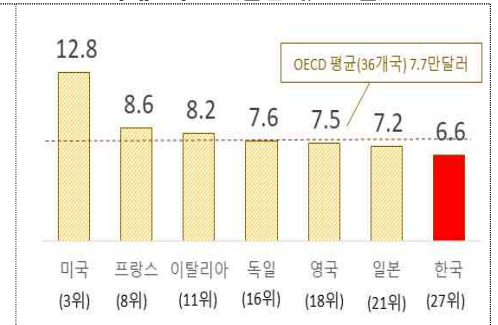
- [현황] 한국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 국내 산업 전체의 노동생산성을 저해
-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13.8만달러, '21년)은 OECD 6위로 높은 편이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6.6만달러)은 27위에 불과

\* 노동생산성(한국생산성본부)=업종별 실질GDP('15년 불변)/업종별 총 취업자수

〈 제조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국제 비교<sup>추</sup>(만달러 , '21년) 〉



〈 서비스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국제 비교<sup>추</sup>(만달러 , '21년) 〉



\* 주 : OECD 38개국 중 자료 확보 가능한 36개국 대상

\*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2023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 한국의 전체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21년 기준 8.2만달러로, OECD 38개국 평균(17.3만달러)을 하회하고, 조사대상 38개국 중 24위로 하위권

- [문제점] 낙후된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본법 부재로 체계적 지원이 미흡

- 한국의 서비스 분야 진입장벽 순위('18년, OECD)는 OECD 조사대상 37개국 중 35위로, 서비스 산업 규제가 주요국에 비해 매우 엄격

\* 진입규제 예시) 대규모유통업 출점 제한, 공공 SW 대기업 참여 제한, 중기적합업종 등

〈 서비스/네트워크 분야 진입장벽<sup>주)</sup> 국제 비교('18년) 〉



\* 주 : 각국의 재화, 서비스 등 시장의 진입장벽 및 정부개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자료 : OECD.stat, Product Market Regulation database

○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세제·금융지원이 미흡해 성장에 제약

\* R&D 세액공제 금액 업종별 비중('22년 기준) : 제조업 93.1% vs. 서비스업 4.8%(국세통계)

〈 서비스업 vs. 제조업 주요 정부지원 차등 제도 예시 〉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전업종	통신판매, 물류업, 일부 정보통신업 및 금융보험업 등 제한적 허용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혜택	전업종	없음
벤처기업 <sup>주)</sup> 확인요건 중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기준	반도체, 컴퓨터 장치, 의약품 등 5~6% 이상	SW개발, 컴퓨터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등 8~10% 이상

\* 주 : '벤처기업' 해당될 경우, 법인세·소득세 등 감면,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등 혜택 부여  
\*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 개선과제 〉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조속 통과로 기업들의 투자 유인

○ 서비스 산업의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입법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  
→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서비스업 지원제도의 근거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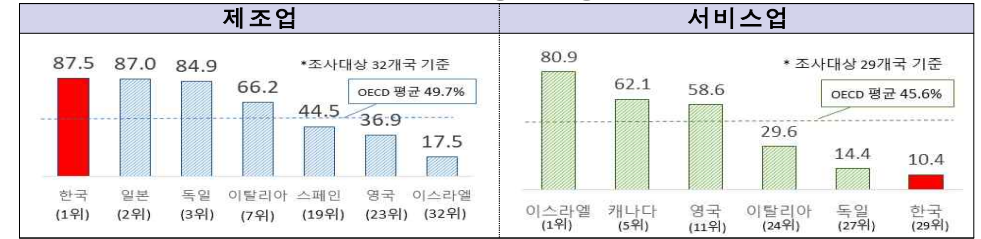
\* 법안 주요 내용(추경호 의원안 등 3건)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서비스산업전진화위원회 설치, 서비스업 규제개선 및 연구개발 지원 등

②-3) 서비스업 R&D 지원 확대

□ [현황] 한국은 서비스업 R&D 투자가 주요국 대비 저조

○ 민간 R&D 지출 가운데 제조업 R&D 비중(87.5%, '19년)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반면, 서비스업 R&D 비중(10.4%)은 OECD 최저

〈 민간 R&D 지출 업종별 비중(%,'19년<sup>주)</sup> 〉



\* 주 : 최신 가용자료인 '19년 기준  
\* 자료 : OECD.stat

□ [문제점] 서비스업 R&D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미흡

○ R&D 비용에 대해 30~50%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국가전략기술 업종이 제조업에 편중, 서비스업 R&D 투자 유인이 상대적으로 부족

\* 국가전략기술 7대 분야 :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차·바이오의약품

\*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당기투자분) : 대·중견기업 30~40%, 중소 40~50%

〈 국가전략기술 예시 〉

분야	세부 중점기술	분야	세부 중점기술
반도체	메모리·차량용 반도체, 고순도 불화수소 설계·제조 등	수소	수전해 기반 및 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 기술 등
이차전지	고에너지밀도 및 리튬 이차전지,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 등	미래형 이동수단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지능정보처리 시스템 등
백신	방어항원 제조, 비임상 시험기술 등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 바이오시밀러 제조 기술 등
디스플레이	AMOLED 및 LED 디스플레이 설계 및 제조 등		

〈 개선과제 〉

◆ 서비스업 R&D 투자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

○ 국가전략기술 대상 업종에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업 추가

\* ex) 연구 개발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업, 광고물 작성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등(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조의4(지식기반산업))

## ② 자본투입 확대

□ 자본투입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투자 확대, 외국인직접투자 확충, 해외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확대가 필요

① [국내기업 투자확대] 신성장동력 지원 강화, 투자세액공제를 확대, 지주회사 규제완화

② [FDI:리쇼어링 확대] 법인세 부담 완화,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

### ①-1) 신성장동력 지원 강화

□ [현황] 한국은 신성장 산업 분야의 기술경쟁력이 주요국 대비 열위

○ 항공·우주, 방산, 바이오, 에너지, ICT 등 주요 신산업 분야의 기술경쟁력이 모두 해외 주요국에 뒤처지는 상황

〈 주요 미래 먹거리 산업별 기술경쟁력<sup>주)</sup> 주요국 비교 〉

	미국	EU	일본	중국	한국
항공·우주	100	93.3	83.5	81.6	68.4
방산	100	88.3	77.0	81.7	75.0
바이오	100	92.2	81.6	78.0	77.9
에너지	100	98.2	91.0	81.6	80.2
ICT	100	90.9	84.3	85.7	83.0

\* 주 : 미국의 기술경쟁력 수준을 100이라고 할 때, 다른 국가들의 기술경쟁력 수준을 평가  
\*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년 기준, 가용 최신)

□ [문제점] 신성장, 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 제도의 활용도가 제한적이어서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제고에 한계

○ 정부가 지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은 다른 일반적인 기술에 비해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우대

\* [신성장·원천기술] 13대 분야 262개 기술, [국가전략기술] 7대 분야(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차·바이오의약품) 62개 기술

〈 R&D 세액공제율 〉

	대	중견	중소
일반기술 (당기투자분 방식 기준)	0~2% <sup>주)</sup>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

〈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현황 〉				추가공제율 (투자증가분)
구분	기본공제율(당기투자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시설	1%(-3%)	5%(-7%)	10%(-12%)	3%(-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3%(-6%)	6%(-10%)	12%(-18%)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5%		25%	4%(-10%)

\* 주) 붉은색은 '23년에 한해 확대된 투자세액공제율

○ 그러나, 지원 대상 기술이 법령에 열거된 기술에 한정(Positive 방식)되어 있고, 열거된 기술의 인정요건도 다소 까다로워<sup>주)</sup> 활용이 제한적

\* 주 : ex)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하는 첨단 메모리반도체 제조기술은 12nm 이하급 D램과 220단 이상의 낸드플래시메모리 제조기술에 한함

※ [사례] A사는 영화·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콘텐츠 기업이다. 최근 영화·방송 콘텐츠 제작 시에는 가상세계 및 우주, 재난 상황 등 장면 촬영에 버추얼 프로덕션(Virtual Production)<sup>주)</sup>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에 활용되는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만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되며, 영화·방송 콘텐츠에 활용되는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A사는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율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주) 가상세트를 영상으로 구현하고 촬영물과 합성, 최종 영상물을 제작하는 기술

○ 기술의 발전속도가 매우 빠르고, 기술간 융합이 왕성한 시대에서 신산업에 해당하는 기술을 열거하여 규정하는 방식은 비합리적

### 〈 개선과제 〉

◆ 신산업에 대한 폭 넓은 지원으로 민간의 적극적 투자 유인

○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규정 방식을 Positive(원칙 배제, 예외 허용) → Negative(원칙 허용, 예외 배제)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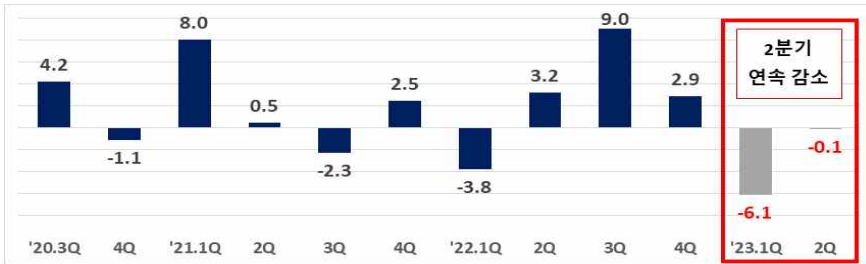
## ①-2) 시설투자 세제지원 확대

□ [현황] 최근 경기 침체 심화로 설비투자 부진 지속

○ 올해 1,2분기 연속 설비투자액 전기 대비 감소(1·2분기 각 △6.1%, △0.1%)

\* 설비투자 2분기 연속 감소는 '18년 2·3분기(각 △8.0%, △1.7%) 이후 약 5년 만에 처음

〈 설비투자액 증가율(%) 추이(계절조정, 명목, 전기 대비) 〉



\*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

□ [문제점] 기업 시설투자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수준이 미흡해 투자 유인 제고에 한계가 있으며, 지원 대상 요건도 까다로워 실효성 한계

○ 현행 시설투자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sup>주)</sup>는 기존의 특정시설공제가 통합·확대('21년 개정)된 것이나, 대·중견기업은 공제율 확대 효과 미흡

\* 주) 사업용 유형자산 등 설비투자 금액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 특정 시설(ex, 환경보전시설 등)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개정 전 공제율이 더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라는 제도 취지가 저해

〈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 개편 동향 〉

~ 2020				2021 ~			
□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투자분 기준)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당기분 기본공제			
연구시험용 및 직업훈련용 시설	7%	3%	1%	- 공제율 : 중소기업 10%, 중견 3%, <b>대 1%</b>			
에너지절약시설	7%	3%	1%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환경보전시설	10%	5%	3%	- [당해 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근로자복지증진시설	10%	5%	3%	× 추가공제율(모든 기업 3%)			
안전시설	10%	5%	1%	· 한도 : 기본공제액의 2배			
생산성향상시설*	7% (10%)	3% (5%)	1% (2%)				

\* ( ) : 대기업 '20년, 중소기업 '21년까지 공제율 한시 상황

○ 또한 현행 시설투자세액공제는 대상 자산에 원칙적으로 토지·건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 필수 사업용 시설임에도 공제를 못 받는 경우 발생

※ [사례] 미디어 콘텐츠 제작 기업인 B사는 사업 특성상 영화 및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한 세트장, 스튜디오와 같은 건물과 구축물 등이 필수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 건물과 차량 등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법령에 명시된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업용 건물·차량 등에 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콘텐츠 제작업은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하는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B사는 사업에 필수적인 세트장과 스튜디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 투자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sup>주)</sup>를 도입하였으나, 올해('23년)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투자 유인 제고에 한계

\* 주)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 1 → 3%, (중견) 5 → 7%, (중소) 10 → 12%로 확대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의 문제점

▶ 자본 투입 규모가 큰 설비투자는 통상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지며, 계획 수립부터 실제 투자까지 장기간 소요

→ 올해 투자 계획 확정, 내년에 투자 집행 시 공제 혜택 불가

▶ 올해 수출 부진 등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 지속으로 기업 자금사정 어려움 가중 → 불황기에 위축된 투자 심리로 기업 투자 촉진 효과가 제한

\* 매출 100대 기업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1.1조원) 전년동기비 96.9% 감소(한경협)

〈 개선과제 〉

◆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및 공제 대상 확대

○ 투자 세액공제율 항구적 확대(대기업 기준 1 → 3%(일반시설 기준))

\*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1%p 확대 시, 민간 설비투자 2.01% 증가(한경연, '23.7월)

○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이면 업종과 관계없이 토지·건물 등의 유형 자산에도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허용(Positive → Negative 전환)

### ①-3) 지주회사 규제 완화

□ [현황] 現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복수 자회사들이 손자회사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것을 금지

○ 자회사들에 대해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도 제한

\* 관련 법령 : 공정거래법 제18조, 시행령 제3조 등

□ [문제점 ①] 단독 투자에 따른 재무 부담으로 신산업 투자, M&A 저해

○ 대규모 M&A 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무 리스크 완화를 위해 복수의 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할 유인이 발생

\* '23년 주요 M&A 매물 규모 : HMM(최대 10조원), 오스텀 임플란트(2.6조원), SK 해운 유조선 사업부(2조원), 전주페이퍼(1조원), 한국 맥도날드(약 5,000억원) 등

○ 공동 출자가 어려운 경우, 투자·인수를 포기하거나 1개 단독 자회사가 자금을 부담하게 되어 부채비율 상승, 신용등급 하락 등 부작용 발생

○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외부자금 차입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내부 자금조달 제한 시 투자기회 상실과 기업 성장 저해 우려

#### < 금리인상에 따른 연간 기업대출 이자 부담액 추이 >

	'22년 9월	'22년 12월	'23년 12월	'22.9월 대비 증감
전체 기업	33.7조원	42.3조원	49.9조원	16.2조원

\* 주 : 기준금리 인상 예상 경로에 따라 가중 평균 차입금리 4.9%('22년 말), 5.26%('23년 말) 가정

\*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22.11월)

□ [문제점 ②] 공동 투자 시 가능한 계열사 간 시너지 확대를 저해하고, 기업집단이 추구하는 신산업 진출에도 걸림돌

○ 동일 기업집단 내 유사한 사업군의 복수 자회사들이 공동 투자 수요가 있으나, 지주회사 집단은 검토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투자방식이 원천 배제

\* ex) 영화·방송·공연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와, 극장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는 둘 다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종으로, 양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도 1개 회사가 전적으로 투자하게 되어 시너지 효과도 낮고 투자책임도 일방이 부담

○ 정부 허가 및 공공 입찰이 필요한 특정 사업의 경우, 사업권 획득 및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자회사 간 협력이 유리하나, 공동 출자가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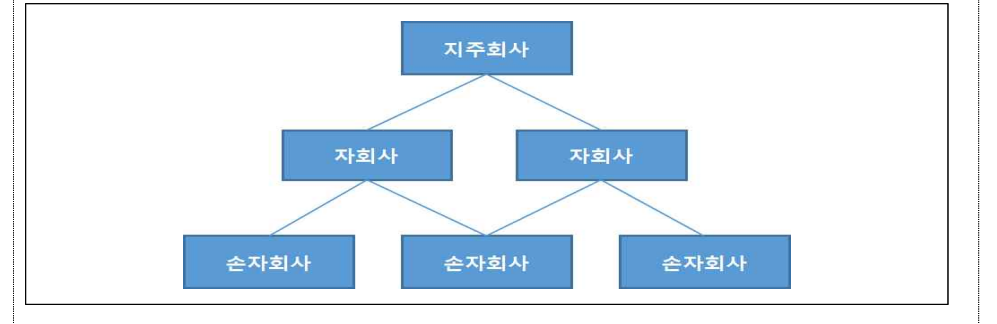
#### < 개선과제 >

◆ 지주회사 자회사들의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 허용

○ 손자회사 공동 출자 허용 시, 지주회사의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지주회사 소속 자회사의 적극적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음

○ 또한 재무적 부담이 완화됨으로써, 계열사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신사업으로의 진출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기여

#### < 지주회사 공동 출자 허용 시, 출자 개념도 >





## ②-2)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

- [현황] 한국은 대립적 노사관계로 인해 경제·사회적 피해가 큰 상황
  - 한국의 노사협력 순위(WEF, '19년)는 141개국 중 130위에 달할 정도로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며, 노사 간 파업도 많아 빈번한 생산차질 발생
    - \* 10년간('12~'21년) 임금근로자 천명당 연평균 파업 손실일수(LOSTAT, KLI): [한국] 38.8일 vs. [미국] 8.6일 [일본] 0.2일 [독일] 8.5일 [영국] 13.0일
  - 최근 5년간('17~'22.상반기) 언론을 통해 공개된 파업에 따른 생산손실액이 6조 5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산업 피해가 큰 상황
- [문제점] 노사관계 관련 법·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노조 측에 기울어져 있어 노사간 힘의 균형이 훼손
  -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파업 시 사용자 대체근로는 금지하고, 노조의 직장점거는 허용하고 있어 파업 시 사용자 대항권이 미흡
  - 부당노동행위 제도도 미국, 일본과 달리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노조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미흡

〈 주요국 대체근로 및 직장점거 제도 비교 〉

구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대체근로	금지	허용		허용	허용 (단, 파견 근로자 노무 거절권 인정)	허용 (단, 파견·기간제 근로자 금지)
직장점거	부분 병존 허용	금지	금지	부분 병존 허용	금지	금지
부당노동 행위	대상	사용자	사용자, 노동조합	-	사용자	-
	형사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없음	-	없음	-

### 〈 개선과제 〉

- ◆ 노사 관련 법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 법치주의 확립
  - 쟁의행위 시 사업장 시설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위해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
  - 파업참여 강요, 조합비 횡령 등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제 마련

## ③ 중요소생산성 제고

- 중요소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혁신·기술진보를 유인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이 필요
  - ① [경영혁신] 규제 완화, 사회적 자본 확충
  - ② [기술진보] R&D 세액공제율 확대, 해외고급인력 유치 확대

### ①-1) 규제 완화

- [현황] 한국은 해외 주요국 대비 민간에 대한 규제 수준이 높음
  - 한국의 상품시장규제(PMR) 지수 순위는 OECD 38개국 중 33위('21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6번째로 규제 강도가 강함
    - \* PMR지수란, OECD가 각국 상품(재화·서비스)시장의 규제 기초를 측정하고 개혁 경과를 추적하기 위해 개발한 지수로서, 지수가 낮을수록 규제 강도가 약함

〈 OECD 상품시장규제 지수('21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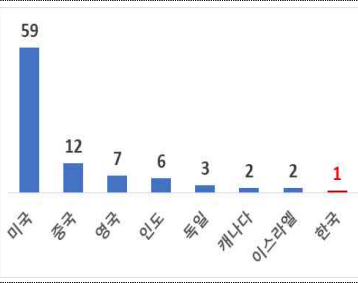
\* 자료 : OECD

- [문제점] 민간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경영활동 자유를 저해하여 생산성과 혁신 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
  - 기업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규제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이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 기업의 탄생이 어려움
    - \* 세계 100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 한국의 유니콘 기업 수는 단 1개(Toss)에 불과('23.5월 기준)

< 규제에 저촉되는 한국 사업 예시 >

< 세계 100대 유니콘 기업 수 >

사업내용	회사	한국 사업 시 저촉되는 규제
차량 공유	디디추싱(中), 그랩(동남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자가용 자동차로 간주되어 택시 영업 불가
숙박 공유	에어비앤비(美)	공중위생관리법 - 오피스텔 영업은 불가, 주거용 건물은 외국인 상대로만 가능
원격 진료	위덕터(中)	의료법 - 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대면한 상태에서만 가능



\* 자료 : CB Insight('23.5월 기준)

○ 특히 한국은 대기업에 대한 차별규제(ex. 기업규제 3법 등)가 심각 →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가 늘어나 성장 의욕을 저해(피터팬 증후군)

\* 기업규제 3법 : 감사위원 분리선임·대주주 의결권 제한(상법), 일감몰아주기 규제 확대(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 규제 강화(금융복합기업집단법)

\* 자산 1천억원인 기업이 적용받는 규제 수는 19개에 불과하나,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 적용받는 규제 수는 342개에 달함('23년 기준)

○ 불합리한 규제는 기업의 국내 투자·고용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내 자본의 해외 이전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거시경제 전반에 악영향

\* 기업들은 규제 강화가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 고용 축소(37.3%), ▶ 투자 축소(27.2%), ▶ 사업장 해외이전(21.8%) 등을 지목(전경련 설문조사, '21.1월)

\* ex) 국내 최대 E-커머스 기업인 쿠팡은 한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차등의결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내 증시에 상장하지 않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21.3월)

< 개선과제 >

- ◆ 규제시스템을 개선하고, 대기업 차별규제를 전면 재검토
- 규제 시스템을 Positive → Negative로 전환하여, 자유와 창의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원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규모별 차별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개별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만 규제를 검토

①-2) 사회적 자본 확충

□ [현황] 한국의 사회적 자본 경쟁력은 전 세계적으로 저조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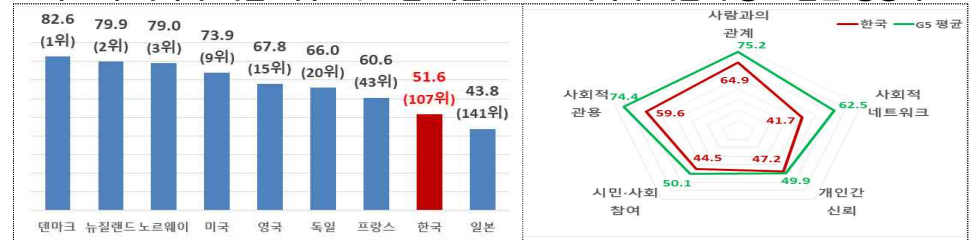
\* 사회적자본이란 사회 구성원 간 협력, 국가 정책·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 등 신뢰·참여·배려를 통해 공동체 간 협력을 촉진시키는 유무형의 자본

○ 한국의 사회적 자본 지수 순위는 '23년 기준 세계 107위(167개국 중), OECD 38개국 중에서는 35위로 최하위 수준

○ 한국은 사회적 자본 구성 요인 중 사회적 네트워크와 관용, 사람과의 관계 등의 부문에서 선진국(G5)과 큰 격차

< 주요국 사회적 자본 지수(주1)('23년 기준) >

< 사회적 자본 구성 요인별 경쟁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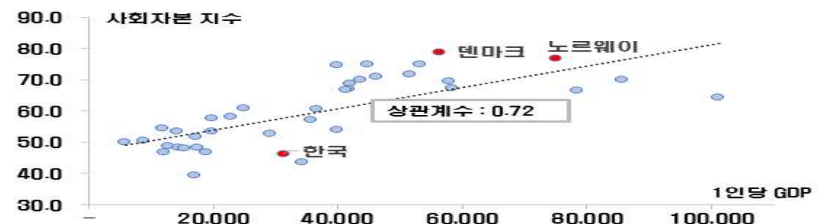
\* 주 : 1) 사회적 자본 경쟁력을 점수화(100점 만점)한 지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 경쟁력 높음  
2) 괄호 안은 전 세계(167개국) 중 순위  
\* 자료 : 영국 레가툼 경제연구소

□ [문제점] 한국의 낮은 사회적 자본은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사회적 자본 경쟁력 개선 시급

○ 사회적 자본은 정책 신뢰도 향상에 따른 정부 성과 증대, 지식 전파(Knowledge Spillover)를 통한 혁신 역량 강화 등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

○ OECD 국가의 사회적 자본과 1인당 GDP 간 높은 상관관계(0.72) 존재

< 사회적 자본 지수와 1인당 GDP 간 상관관계 분석 >



\* 주 : 사회적 자본 지수(레가툼 연구소), 1인당 GDP(WB) 통계를 바탕으로 한경연 추정('22.3월)

- 한국 사회적 자본 지수가 G7(평균 63.8)까지 제고 시, 1인당 GDP 성장률이 1.5%p 상승, 전체 GDP는 32조원('22년 기준) 증가(환경연, '22.3월)

**< 개선과제 >**

- ◆ 법·제도 시행의 안정성·일관성 확보로 국민 신뢰도 제고
  -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규제는 최소화하고, 사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제도 집행 환경을 마련
  - 법 시스템이 안정되고 사적 재산권 보호가 잘 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사회적 자본 지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요국 법 시스템 안정성 & 재산권 보호 정도와 사회적 자본 경쟁력 순위 >**

국가	순위(전 세계 기준)		국가	순위(전 세계 기준)	
	법 시스템 안정성 & 재산권 보호 정도 <sup>주)</sup> (21년 기준)	사회적 자본 지수 (23년 기준)		법 시스템 안정성 & 재산권 보호 정도 <sup>주)</sup> (21년 기준)	사회적 자본 지수 (23년 기준)
덴마크	2위	1위	아이슬란드	6위	5위
뉴질랜드	1위	2위	핀란드	5위	7위
노르웨이	3위	3위	한국	31위	107위

\* 주 :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의 경제자유지수(Economic Freedom Index) 구성 항목으로, 각국의 법적 시스템 안정성과 재산권 보호 정도를 수치화하여 나타낸 지수의 순위  
\* 자료 : 프레이저 연구소, 레가툼 연구소

- 포퓰리즘을 배제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마련 (법제화)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 사회적 자본 경쟁력이 높은 주요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현황 >**

국가	준칙 종류	주요 내용(법제화 년도)
덴마크 (1위)	재정수지준칙	▶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0.5% 이내 유지('14년)
스웨덴 (4위)	재정수지준칙 채무준칙	▶ 정부 재정수지 흑자 규모를 GDP 대비 0.33%로 유지('00년) ▶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35% 수준 유지('19년)
미국 (9위)	지출준칙	▶ 페이고(Pay-As-You-Go) 준칙 : 지출 증가, 세입 감소 등 재정적자를 야기할 수 있는 정책 입법 시, 이에 대응되는 자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시행(입법)되도록 의무화('10년)
한국 (107위)	-	▶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지 않음 * 관련 법안 발의되었으나('22.9월), 현재 국회 계류 중

\* 주 : 국가명 괄호( )내 순위는 사회적 자본 경쟁력 순위(전 세계 기준)  
\* 자료 : IMF Fiscal Rule Dataset

**②-1) R&D 세액공제를 확대**

- [현황] 우리나라는 기업 R&D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R&D 세제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규모별로 공제율 차등

**< R&D 세액공제율(일반 산업, 당기투자분 기준) 현황 >**

기업구분	R&D 세액공제율
대기업	'당기 R&D 비용 / 수입금액(매출액) × 1/2' (2% 한도)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

- [문제점] 기업 규모별 공제율 격차가 과도하여 R&D 경쟁력 제고 한계
  -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은 최근 10년간 같은 수준이 유지되었지만, 대기업은 지난 '13년 이후 공제율이 지속 축소되며 격차가 확대
  - R&D 세액공제율의 축소는 민간 R&D를 견인하고 있는 대기업의 R&D 유인을 위축시켜 민간 전체 R&D 둔화 요인으로 작용

**< R&D 세액공제율 추이(일반 산업, 당기투자분 기준) > < 민간 R&D 연평균 증가율 추이 >**



\* 주 : 대기업은 세액공제율 상한을 기준으로 함 \*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R&D는 기업규모를 막론하고 리스크가 큰 사업으로,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세제지원 수준에 지나친 차등을 두는 것은 비합리적
- 해외 주요국들은 기업규모 구분 없이 균등하게 R&D를 지원하거나, 차등 지원 하더라도, 기업규모별 격차가 크지 않음
- 특히, 대기업 세제지원 정도는 주요국 중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

< 주요국 R&D 조세지원율('22년 기준) 비교 >

균등지원		차등지원		
국가	R&D 조세지원율	국가	R&D 조세지원율	
			대기업	중소기업
미국	3%	대한민국	2%	26%
프랑스	36%	일본	17%	20%
독일	19%	영국	12%	27%
이탈리아	20%	캐나다	13%	31%

\* 주 : R&D 조세지원율은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원 정도를 나타내며, 조세 지원율이 2%이면 100만 원 R&D 투자를 했을 때 정부로부터 2만 원의 조세지원을 받는 효과  
\* 자료 : OECD

< 개선과제 >

- ◆ R&D 세액공제율 확대를 기업 혁신역량 및 생산성 제고
-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일반 산업 기준)을 0~2% → 6%로 확대
- \* 대기업도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처럼 정률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경기 변동에 따른 R&D 공제율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

②-2) 해외고급인력 유치 확대

- [현황] 저출산·고령화와 노동시장 미스매치 등으로 인해 전문기술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외국인 전문 인력 활용도가 저조
- 12대 주력 산업 기술인력 부족 인원은 최근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21년 기준 부족한 기술인력은 2.9만 명으로 최근 10년 중 최대
- \* 12대 주력산업(산업부) : 기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바이오·헬스, 섬유,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화학, 소프트웨어, IT비즈니스
- 한국의 외국인 취업자는 단순기능인력 중심이며 전문인력 비중이 낮음
- \*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통계청, 일본 법무성) : 한국 4.8%('22년) vs. 일본 22.8%('21년)

< 12대 주력 산업 기술인력 부족 인원 추이 > < 한국·일본의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 >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자료 : 통계청, 일본 법무성

- [문제점] 해외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필요
- 기술인력 공급난 완화를 위한 대안은 해외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기술자의 체류 여건 개선 필요
- 전문·기능인력이 발급받는 E-7 비자의 경우, 최저연봉 기준 제약, 쿼터제 등 고용 요건이 까다로워 외국인 우수인재 채용에 애로
- \* E-7 비자 외국인 고용요건 : ① '기업별 내국인 고용자의 20% 내'에서만 고용이 허용되며, ② 최저 임금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이어야 함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를 10년간 50% 감면해주는 조세 특례가 존재하나, 이 역시 요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혜택 수혜가 어려움

-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50%) 특례 요건 : ①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해 고용되거나, ② 이공계 등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업무 경력을 갖추고 국내 특정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 실제로 '22년 기준 국내 외국인 전문인력 수는 4.1만명이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은 총 25억원(전문인력 1인당으로 환산 시, 6.1만원 수준)에 불과
- 또한,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유인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세 감면 외에도 상속·증여세 감면 등 특례 고려 필요
- \* 일본은 해외 고급인력의 유치를 위해 '21년부터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해외 재산에 상속·증여세 과세 면제 적용
- \* 한국은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국내·해외재산 모두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

**< 일본의 해외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정 >**

< 개정 전(~2020년) >	< 개정 후(2021년~) >
외국인이 일본에 체류한 기간이 10년 이하일 경우 일본에 소재하는 재산만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이나, 체류 기간이 10년 초과 시, 국내+해외 재산 모두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	고도 숙련 전문직 등 일정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경우, 체류 기간과 무관하게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비과세 적용

**< 개선과제 >**

- ◆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확대
- E-7 비자의 채용 쿼터 최대 한도를 확대(국내 인력의 20%→50%)하고, 최저임금 기준(1인당 GNI의 80% 이상)은 폐지
- 현행 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 기술자 대상에 'E-7 비자를 발급받아 채용되어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포함
-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일본의 경우처럼 해외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비과세

**[첨부 1] G7과 한국의 주요 경제지표 비교**

**1. 노동분야**

- [경제활동참가율]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0.5%로 G7국 중 이탈리아(65.5%)를 제외하고 가장 낮으며, G7 평균 대비 5.1%p 저조
-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총인구(OECD 기준, 15세 이상~64세)
- G7 평균의 경제력 달성을 위해서는 185만명\*의 추가 경제활동 참여 필요
- \* 185만명 = 3,623만명×5.1%(OECD 15세 이상~64세 미만 기준)

**< G7과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

(단위 : %)

G7							G7 평균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74.0	80.6	79.4	78.3	73.6	79.8	65.5	75.6	70.5

\* 자료 : OECD, '22년 기준

- [노동생산성]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GDP per hour worked)은 46.9\$로 G7국가 대비 최하위이며, G7국 평균 노동생산성 74.2\$의 63.2% 수준
- G7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27.3\$의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요

**< G7과 한국의 노동생산성 비교 >**

(단위 : \$)

G7							G7 평균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85.0	49.1	81.0	69.5	80.6	63.1	66.3	74.2	46.9

\* 자료 : OECD, '22년 기준

## 2. 자본분야

□ **[총고정자본형성]** 한국의 총고정자본 투자액(5,385억 달러)은 G5 국가(미·일·독·영·프)에는 못 미치지만, 캐나다와 이탈리아를 상회

### < G7과 한국의 총고정자본형성 비교 >

(단위 : 억불)

G7							G7 평균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54,761.0	11,083.5	9,016.1	5,666.6	7,002.7	4,938.9	4,497.6	13,852.4	5,384.9

\* 자료 : IMF(미국), OECD(그 외 국가), '22년 기준

□ **[그린필드 FDI]** 그린필드 투자액은 한국이 G7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투자 유치 실적이 저조

\* 그린필드 FDI : 공장 등 생산설비를 신설·확장하는 투자로서, 고용창출·기술이전 효과 높음

### < G7과 한국의 그린필드 FDI 비교 >

(단위 : 억불)

G7							G7 평균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1,638.6	60.5	344.0	1,023.6	202.4	208.6	254.4	533.1	134.0

\* 주 : 실제 이루어진 투자액이 아닌 투자 발표액(Announced) 기준

\* 자료 : UNCTAD, '22년 기준

□ **[FDI 매력도(FDI 신뢰지수)]** 높은 법인세 부담, 과도한 시장 규제 등으로 인해 한국은 G7 국가들에 비해 투자매력도가 저조

\* FDI 신뢰지수(Kearney) :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각 국가에 대한 투자 선호도를 평가하여 수치화한 지수로서, 지수값이 높을수록 투자 매력도가 높음

### < G7과 한국의 FDI 매력도 비교 >

G7							G7 평균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2.31	2.07	2.05	2.04	2.03	2.21	1.85	2.08	1.71

\* 자료 : Kearney, '23년 기준

## 3. 교역분야

□ **[총교역]** 미국이 5조 3천억 달러로 가장 많고 이어 독일(3조 2천억) 순이며 일본, 프랑스, 한국은 1조 4천억~1조 6천억 달러로 비슷한 수준

\* 교역액 : 국가별 수출액 + 수입액

### < G7과 한국의 교역액 비교 >

(단위 : 10억불)

G7							G7 평균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5,310	1,644	3,228	1,343	1,437	1,198	1,346	2,215	1,414

\* 자료 : IMF, '22년 기준

## 4. 중요소생산성분야

□ **[중요소생산성(TFP)]** 혁신, 기술 경쟁력 미흡으로 한국이 G7에 비해 미흡

### < G7과 한국의 중요소생산성 비교 >

G7							G7 평균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1	0.66	0.93	0.79	0.91	0.85	0.73	0.84	0.61

\* 주 : 미국의 수준을 1로 두고, 다른 국가들의 수준을 평가한 상대적 지표

\* 자료 : Penn World-Table, '19년 기준

□ **[사회적자본]** 한국의 사회적자본 지수 순위는 G7국 대비 열위

\* 사회적자본이란 사회 구성원 간 협력, 국가 정책·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 등 신뢰·참여·배려를 통해 공동체 간 협력을 촉진시키는 유무형의 자본

### < G7과 한국의 사회적자본지수 비교 >

G7							G7 평균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73.9	43.8	66.0	67.8	60.6	73.6	61.0	63.8	51.6

\*\* 주 : 1) 사회적 자본 경쟁력을 점수화(100점 만점)한 지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 경쟁력 높음  
2) 괄호 안은 전 세계(167개국) 중 순위

\* 자료 : 영국 레가툼 경제연구소, '22년 기준

## [첨부 2] EIU DEMOCRACY INDEX 2022

### DEMOCRACY INDEX 2022

#### FRONTLINE DEMOCRACY AND THE BATTLE FOR UKRAINE

displacement of about 1.7m people and the deaths of thousands. Haiti, the poorest country in the western hemisphere, appears to be in a state of internal dissolution, as the authorities have lost control completely. Several countries in Latin America, including El Salvador and Mexico, register big negative changes in their scores in 2022.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the worst-performing region in terms of its absolute score and its year-on-year score change, Tunisia, Iraq and Jordan all register sharp declines in their scores.

In keeping with the overall theme of inertia and stagnation, there are only five changes of regime category in the 2022 Democracy Index, three positive and two negative. In terms of upgrades, Chile, France and Spain return to the “full democracy” category, mainly because of a reversal of pandemic measures that had infringed citizens’ freedoms in 2020-21. Two countries, Papua New Guinea and Peru, have been downgraded, both from a “flawed democracy” classification to that of a “hybrid regime”. As a consequence of these changes, the number of “full democracies” increases from 21 in 2021 to 24 in 2022, while the number of “flawed democracies” falls from 53 to 48 and the number of “hybrid regimes” increases from 34 to 36. The number of “authoritarian regimes” remains the same, at 59.

**Table 2**  
**Democracy Index 2022**

	Overall score	Rank	Change in rank from previous year	I 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II Functioning of government	III Political participation	IV Political culture	V Civil liberties
Full democracy								
Norway	9.81	1	0	10.00	9.64	10.00	10.00	9.41
New Zealand	9.61	2	0	10.00	9.29	10.00	8.75	10.00
Iceland	9.52	3	2	10.00	9.64	8.89	9.38	9.71
Sweden	9.39	4	0	9.58	9.64	8.33	10.00	9.41
Finland	9.29	5	-2	10.00	9.64	8.33	8.75	9.71
Denmark	9.28	6	0	10.00	9.29	8.33	9.38	9.41
Switzerland	9.14	7	2	9.58	9.29	8.33	9.38	9.12
Ireland	9.13	8	-1	10.00	8.21	8.33	10.00	9.12
Netherlands	9.00	9	2	9.58	8.93	8.33	8.75	9.41
Taiwan	8.99	10	-2	10.00	9.64	7.78	8.13	9.41
Uruguay	8.91	11	2	10.00	8.93	7.78	8.13	9.71
Canada	8.88	12	0	10.00	8.57	8.89	8.13	8.82
Luxembourg	8.81	13	1	10.00	8.93	6.67	8.75	9.71
Germany	8.80	14	1	9.58	8.57	8.33	8.13	9.41
Australia	8.71	15	-6	10.00	8.57	7.78	7.50	9.71
Japan	8.33	16	1	9.17	8.57	6.67	8.13	9.12
Costa Rica	8.29	17	3	9.58	7.50	7.78	6.88	9.71
United Kingdom	8.28	18	0	9.58	7.50	8.33	6.88	9.12
Chile	8.22	19	6	9.58	8.21	6.67	7.50	9.12
Austria	8.20	20	0	9.58	7.14	8.89	6.88	8.53
Mauritius	8.14	21	-2	9.17	7.86	6.11	8.75	8.82
France	8.07	22=	0	9.58	7.86	7.78	6.88	8.24

	Overall score	Rank	Change in rank from previous year	I 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	II Functioning of government	III Political participation	IV Political culture	V Civil liberties
Spain	8.07	22=	2	9.58	7.50	7.22	7.50	8.53
South Korea	8.03	24	-8	9.58	8.57	7.22	6.25	8.53
Flawed democracy								
Czech Republic	7.97	25=	4	9.58	6.43	7.22	7.50	9.12
Greece	7.97	25=	9	10.00	7.14	6.67	7.50	8.53
Estonia	7.96	27	0	9.58	7.86	6.67	6.88	8.82
Portugal	7.95	28	0	9.58	7.50	6.67	6.88	9.12
Israel	7.93	29	-6	9.58	7.86	9.44	6.88	5.88
United States of America	7.85	30	-4	9.17	6.43	8.89	6.25	8.53
Slovenia	7.75	31	4	9.58	7.14	7.22	6.25	8.53
Botswana	7.73	32	-2	9.17	6.79	6.67	7.50	8.53
Malta	7.70	33	0	9.17	7.14	5.56	8.13	8.53
Italy	7.69	34	-3	9.58	6.79	7.22	7.50	7.35
Cabo Verde	7.65	35	-3	9.17	7.00	6.67	6.88	8.53
Belgium	7.64	36	0	9.58	8.21	5.00	6.88	8.53
Cyprus	7.38	37	0	9.17	5.36	6.67	6.88	8.82
Latvia	7.37	38	0	9.58	6.07	6.11	6.25	8.82
Lithuania	7.31	39	1	9.58	6.43	6.11	5.63	8.82
Malaysia	7.30	40	-1	9.58	7.86	7.22	6.25	5.59
Trinidad and Tobago	7.16	41	0	9.58	7.14	6.11	5.63	7.35
Jamaica	7.13	42	0	8.75	7.14	5.00	6.25	8.53
Slovakia	7.07	43	2	9.58	6.07	5.56	5.63	8.53
Timor-Leste	7.06	44	-1	9.58	5.93	5.56	6.88	7.35
South Africa	7.05	45	-1	7.42	7.14	8.33	5.00	7.35
India	7.04	46=	0	8.67	7.50	7.22	5.63	6.18
Poland	7.04	46=	5	9.17	6.07	6.67	6.25	7.06
Suriname	6.95	48	1	9.58	6.43	6.11	5.00	7.65
Panama	6.91	49	-1	9.58	6.07	7.22	3.75	7.94
Argentina	6.85	50	0	9.17	5.00	7.78	4.38	7.94
Brazil	6.78	51	-4	9.58	5.00	6.67	5.00	7.65
Philippines	6.73	52	2	9.17	5.00	7.78	4.38	7.35
Colombia	6.72	53	6	9.17	6.07	6.67	3.75	7.94
Indonesia	6.71	54	-2	7.92	7.86	7.22	4.38	6.18
Thailand	6.67	55	17	7.42	6.07	8.33	5.63	5.88
Hungary	6.64	56	0	8.33	6.79	4.44	6.88	6.76
Bulgaria	6.53	57	-4	9.17	5.36	6.11	4.38	7.65
Namibia	6.52	58	-3	7.00	5.36	6.67	5.63	7.94
Croatia	6.50	59	-3	9.17	6.07	6.11	4.38	6.76
Sri Lanka	6.47	60	7	7.00	5.71	7.22	6.25	6.18
Montenegro	6.45	61=	13	7.42	6.79	7.22	3.75	7.06
Romania	6.45	61=	0	9.17	6.43	5.56	3.75	7.35
Ghana	6.43	63	-7	8.33	5.00	6.67	6.25	5.88
Albania	6.41	64	4	7.00	6.43	5.00	6.25	7.35
Dominican Republic	6.39	65	-5	9.17	5.36	7.22	3.13	7.06
Mongolia	6.35	66	-4	8.75	5.36	6.11	5.63	5.88
Guyana	6.34	67	-2	6.92	6.07	6.67	5.00	7.06
Serbia	6.33	68	-5	7.83	6.07	6.67	3.75	7.35
Moldova	6.23	69	0	7.42	5.36	7.22	4.38	6.76
Singapore	6.22	70	-4	4.83	7.86	4.44	7.50	6.47
Lesotho	6.19	71	-7	9.17	4.14	5.56	5.63	6.47
North Macedonia	6.10	72	1	7.83	6.07	6.11	3.13	7.35

## [첨부 3] [국내 인력 대체를 위한] 적정 이민 취업자 유입 수 추산

### □ 분석 방법

① '31년까지의 경제활동인구 연평균 증감률 전망치를 사용하여 연도별 ('23~'31년) 경제활동인구 전망치 추산

\* 경제활동인구 증감률 전망치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3.3월)」

② '31년까지의 연도별 실업률(= 실업자/경제활동인구) 전망치와 ①에서 추산한 경제활동인구 전망치를 사용하여, 연도별 실업자 전망치를 추산

\* 실업률 전망치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3년 및 중기 경제전망('22.10월)」

\* 실업자 전망치 = 경제활동인구 전망치 × 실업률 전망치

③ 연도별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 실업자)에서 실업자 수를 차감하여 연도별 취업자 수를 추산하고, 매년 전년 대비 취업자 수 감소 폭을 계산

\* 가정 : 매년 전년 대비 취업자 수 감소분만큼 이민자가 새로 유입되어 이들을 대체한다고 가정

### □ 분석 결과

○ 향후 저출산·고령화로 줄어드는 인력(취업자) 대체를 위해서는 '31년 까지 총 200.7만명(연평균 22.3만명)의 이민 취업자 신규 유입 필요

#### < 향후 인구 시나리오에 따른 연도별 신규 이민 취업자 유입 수기존 국내 인력 대체 가정 >

(단위 : 천 명)

연도 (연말 기준)	경제활동인구(A) (15~64세)	실업자(B) (15~64세)	취업자(=A-B) (15~64세)	전년 대비 취업자 수 감소 (=필요 이민 취업자 유입 수)	
2022년(확정)	25,556	732	24,824	=	
2023년E	25,351	862	24,489	335	합계 : 2,007
2024년E	25,147	931	24,216	273	
2025년E	24,945	923	24,022	194	
2026년E	24,744	916	23,828	194	
2027년E	24,525	883	23,642	186	
2028년E	24,308	875	23,433	209	
2029년E	24,093	868	23,225	207	
2030년E	23,879	859	23,020	205	
2031년E	23,668	852	22,816	204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국회예산정책처 등을 참고하여 한경협 추산